

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,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326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3월 16일

발 의 자 :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최근 감사원의 지방공공기관 취약업무 감사 결과 등을 통해 하남도시공사의 인력 채용 및 공무국외출장, 자문인력 운영 등 행정 집행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
- 지난해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, 국외출장 목적과 다른 일정 진행 의혹, 출장보고서 부실 작성, 자료 제출 미흡 및 진술의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음.
- 하남도시공사의 국외출장 추진 및 자문인력 운영 등 행정 집행에 대해 행정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·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.

2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- 「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조사)

3. 조사개요

- 조사주체: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
- 활동기간: 위원회 구성일('26.3.16.)부터 40일
- 조사대상기관
 - 하남시 기획조정과, 투자유치과, 하남도시공사 등 위 사업 관련 공무원 및 그밖에 관계자

○ 조사범위

- 자문관·고문 등 자문인력 운영 및 인사관리 전반
- 채용 절차 및 자격요건 검증 등 채용 공정성 관련 사항
- 하남도시공사 공무국외출장 추진 및 출장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
- 국외출장 목적과 실제 일정 수행 여부
-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및 진술 적정성 여부
- 감사원 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부적정 행정 집행 의혹 관련 사항

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,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

1 조사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및 「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하남도시공사의 인력 채용 및 국외출장, 자문인력 운영 등 행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 조사근거 및 활동기간

□ 조사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
- 「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□ 활동기간

- 위원회 구성일(26.3.16.)부터 40일

※ 조사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

□ 조사대상

- 하남시 기획조정과, 투자유치과 등 위 사업 관련 공무원
-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및 소관부서 공무원
- 기타 위 사안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 등

□ 조사범위

- 자문관·고문 등 자문인력 운영 및 인사관리 전반
- 채용 과정 중
 - 채용 절차 준수 여부
 - 채용 자격요건 충족 여부
 - 채용 공정성 및 적정성 여부
- 하남도시공사 공무국외출장 추진 과정 및 출장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
- 국외출장 목적 및 실제 일정 수행 여부
-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및 진술의 적정성 여부
- 감사원 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부적정 행정 집행 의혹 관련 사항
- 위 사안 관련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간 협의 내용 및 관련 문서 일체

4

조사반 편성(안)

□ 구성인원 : 5명

구 분	위 원 회 직 위	성 명
조 사 위 원 (5 명)	위 원 장	정 병 용
	부 위 원 장	최 훈 종
	위 원	정 혜 영
	위 원	강 성 삼
	위 원	오 승 철
보 조 공 무 원 (7 명)	의 전 회 문 운 위 영 원	고 영 일
	자 전 치 문 행 위 정 원	유 정 수
	도 전 시 문 건 위 설 원	고 영 일
	지 방 행 정 주 사	박 대 환
	정 책 지 원 관	유 명 호
	정 책 지 원 관	손 예 린
	정 책 지 원 관	이 재 호
	정 책 지 원 관	임 종 복

※보조공무원의 경우 직무 변경(인사발령 등) 될 경우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.

5

조사일정 및 장소

차 수	대상기관 및 대상자	장 소	내 용	비 고
제1차 (3월 16일)	-	소회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장, 부위원장 선출 ○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	제346회 임사회 개회(1일)
제2차 (3월 17일)	-	소회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류제출 목록작성 및 요구 ○ 출석관계공무원, 증인, 참고인 등 선정(결정) ○ 차기 일정 결정 	
제3차~4차 (3월00일~ 3월00일)		소회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류확인 및 질의·답변 ○ 출석관계공무원, 증인, 참고인 등 선정(결정) ○ 서류제출요구 ○ 현장방문 결정(필요시) ○ 차기 일정 결정 	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 선서
제5차 (4월00일)	미진사항 조사 및 결과보고서작성	소회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○ 의견서 채택(필요시) 	
차 기 임사회	조사결과 보고	본회의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장 결과보고 	

※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.

□ 조사요령(방법)

- 조사와 관련된 보고 청취, 자료의 제출 및 열람요구
- 조사와 관련된 현지확인 대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요구
- 증인, 참고인 등에 대한 증언·의견진술은 질의응답형식으로 실시
-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하되,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함.
- 필요시 조사와 관련된 전문가 강의, 참고인 의견청취를 할수있음.
- 기타 사항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 준용

※ 조사에 필요한 현지확인,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, 증인 등의 출석은 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전달되도록 함.

※ 공개가 원칙이지만 언론사 조사장 입장여부 등에 대하여 비공개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조사위원 및 사무보조자 이외는 행정사무조사장 출입을 금함.

□ 조사진행 순서

1) 서류제출, 증인·참고인, 현지확인 대상 선정·의결

- 서류제출 목록 및 증인·참고인 선정은 본회의 계획안 승인시와 조사특위 활동시 수시로 할 수 있고, 서류목록 및 증인·참고인을 선정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함.

2) 조사대상기관에 서류(자료) 제출 요구

3) 증인, 참고인 등 출석요구, 현지확인(필요시) 서류 송달

4) 행정사무조사 실시

- ① 조사실시 선언(위원장)
- ② 위원장인사
- ③ 증인선서(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 및 관련자 등)
- ④ 조사대상사무에 대한 업무현황 및 제출 자료 보고 청취
- ⑤ 질의·답변 및 관련자료 요구(필요시 현지확인,증인청취 등)
- ⑥ 조사 종료 선언(위원장)

- 조사종료 후 조사위원이 조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.

5) 조사결과보고서 작성·의결, 제출

6)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결과 및 이행실태 하남시의회 보고

7

소요경비

- 증인, 참고인 등 출석여비 및 제반비용 등은 의회의 지급기준에 따름.

8

조사결과 보고

- 조사위원은 일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
- 위원회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 등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
- 조사결과 처리의견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
 - 1) 시정사항(지적사항)
 - 2) 건의사항

9

조사계획 변경

- 조사일정, 시간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결정
- 보조사무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직무가 변경될 경우 변경 공무원으로 지정(의회사무국 발령사항 첨부)

붙임 : 1. 서류(자료) 제출 요구 목록 1부.
2. 조사 일일 결과 보고서 1부.
3. 선서문(안) 1부. 끝.

[별첨 1] 서식

서류(자료) 제출 요구 목록

【대상기관: 】

연번	요 구 자 료 명	요구의원	비고

조사 일일 결과보고서

해당과	시 정 사 항(지적사항)	건 의 사 항

※ 장려사항

2026. . .

의원명

(인)

선 서

본인은 하남시의회가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기관명 :

선서인 : 직위(급)

성명

(인)